

# 「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19호  
「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 
원폭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 
등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, 원폭피해자  
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지원계획의 수립  
에 포함하여 원폭피해자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  
모하고자 함입니다.
-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 
및 손자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지원계획의 수립에 피해

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, 특히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 
아무쪼록,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 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